

-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-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 안내

■ 신청대상

-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합격자 및 제1차시험 면제자 중 장애인이거나 일시적 장애, 임신 등으로 제2차 시험에서 편의제공이 필요한 자

■ 신청기간 : 2022. 4. 6.(수) ~ 4. 12.(화)

- * 다만 임신부는 신청기간 이후에 임신 사실을 인지한 경우 별도 유선 문의
(문의 : 인사혁신처 공개채용2과 ☎ 044-201-8259, 8363)

■ 신청방법 : 이메일로 신청

-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(참고1)을 확인하고 편의제공 신청서(참고3) 양식에 따라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2022. 4. 12.(화)까지 이메일(ykw0314@korea.kr)로 제출
 - 제1차시험에서 편의제공을 받았을 경우에도 별도 신청하여야 함
 - 2021년도 이후 국가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제공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제공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.
 - ※ 단, 서류 발급일이 편의제공 신청마감일(2022. 4. 12.)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함
 - 2022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는 별도의 편의제공 신청 없이 '시험시간 중 별도로 지정된 시간 내 화장실 사용'이 가능합니다.
 - ※ 단, 민감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한 자에 한함

■ 제출서류

- 제1차시험에서 편의제공을 받았을 경우 증빙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음
- 신규 또는 추가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경우 2022. 4. 12.(화)까지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(신청마감일 당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)
 - ※ 서류제출처 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(어진동) 세종포스트빌딩
인사혁신처 공개채용2과 편의제공 담당자(우편번호 30102)
- 기타 사항은 인사혁신처 공개채용2과(☎ 044-201-8259, 8363)로 문의 바랍니다.

참고 1

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

장애유형 및 정도		필기시험		비고	
		편의제공 내용	증빙서류		
지체장애	상지	공통	· 확대문제지 제공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· [논문형 시험] 답안작성용 컴퓨터 제공	-	
	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논문형 시험 1.2배)	-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	·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	-		
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/ 심하지 않은 사람	· 휠체어 전용 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기존 1~6급	
뇌병변장애	공통	· 확대문제지 제공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휠체어 전용책상 제공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· [논문형 시험] 답안작성용 컴퓨터 제공	-		
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논문형 시험 1.2배)	-	기존 1~3급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	의사 진단서	기존 4~6급	
시각장애	공통	· 확대문제지 제공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[논문형 시험] 답안작성용 컴퓨터	-		
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04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논문형 시험 1.5배) · 음성지원컴퓨터 제공	의사 진단서	
		·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 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(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) ·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	-	기존 3급 2호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논문형 시험 1.2배)	-	기존 3급 1,2호
		·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논문형 시험 1.5배) ·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· 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(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) ·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	의사 진단서	기존 4급 2호
·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	· 시험시간 연장(논문형 시험 1.2배)	-		
청각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/ 심하지 않은 사람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	-	기존 4,5급 1호	
		· 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논문형 시험 1.2배)	의사 진단서	
	·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	·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	-	기존 5급 2호, 6급	
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	·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	검토 후 안내			
임신부	· 눈높이 조절책상 제공 · 시험중화장실 사용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			
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	· 시험중화장실 사용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의사 진단서			

* 확대문제지 : A3 규격의 118%(14point), 150%(18point)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
* 축소문제지 : A4 규격의 82%(10point)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

※ 점자문제지는 개정된 전자규정('17.3.28.시행)을 반영하여 제공됩니다.
※ 제2외국어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 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※ 음성지원 s/w 탑재 컴퓨터는 시험장 상황에 따라 windows 7 또는 windows 10으로 제공됩니다.

1. 발급기관 :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

- ※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병원·약국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- ※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※ 다만,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

2. 발급일자 : 해당 시험 편의제공 신청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(원본)

구 분	2022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
편의제공 신청마감일	2022년 4월 12일
진단서(소견서) 발급일	2020년 4월 13일 이후

3. 의사진단서(소견서)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

- ① 장애유형 및 등급(정도)에 대한 구체적 진술 ※ 시각장애의 경우, 시력 또는/및 시야값 명기
-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 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
예시)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컴퓨터, 점자문제지를 신청할 경우
 ⇒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 내역: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컴퓨터, 점자문제지

-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(소견서)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(소견서)에 의함
-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, 편의제공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

< 의사진단서(소견서) 발급 내용 예시 >

장애유형 및 정도	예 시	※ ①~③ 반드시 기재
시각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자	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- 시력/시야 : 좋은 눈 0.07,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됨 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 컴퓨터, 점자문제지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- 시력 : 나쁜 눈 0.02이하, 좋은 눈 교정시력 0.3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이 어려움 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
뇌병변장애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- 증상 :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작성이 어려움 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
기 타		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 - 증상 :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안으로 인한 눈의 운동장애 등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이 어려움 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(단, 장애판정을 받은 장애인에 한함)

※ **시험시간 연장**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**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** (소견서 불인정)

응시번호		성명	
휴대폰 번호			
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	<p>※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 S/W탑재 컴퓨터, 점자지원 등의 편의 제공을 신청한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, 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</p>		

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시험을 위하여 위와 같이 편의제공을 신청합니다.

2022 . . .

성명 : (서명)

인사혁신처장 귀하